

인정적 연금관리로 교직원 및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합니다.

# 2024년 생활자금대여 안내서

## 업 무 처 리 기 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목 차

<b>I. 2024년도 대여업무처리 기준 주요 변경사항</b> .....	<b>1</b>
<b>II. 2024년 생활자금대여 업무처리기준</b> .....	<b>2</b>
1. 생활자금대여 개요 .....	2
2. 대여 일반기준 .....	2
3. 대여 종류별 대출요건 및 증빙서류 .....	6
4. 대여신청 및 지급 업무처리 .....	8
5. 대여상환 업무처리 .....	11
<b>III. SGI 서울보증보험 증권 설정 프로세스 등</b> .....	<b>18</b>
<b>IV. 금융기관 협약대출</b> .....	<b>21</b>
<b>V. 생활자금대여 홈페이지 메뉴 안내</b> .....	<b>23</b>
<b>VI. 연금업무지원시스템 대여정보 목록</b> .....	<b>24</b>
<b>VII. 대여관련 서식</b> .....	<b>25</b>

# I. 2024년도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구분		내 용										
□ 신청기간	기존	□ 신청기간 - 매월 1일 00:00 ~ 대여종류별 예산 소진 시 까지 * 단, 1월에 한해 1월 2일 09:00부터 대여종류별 배정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시에 TP 홈페이지에 “대여마감 안내” 별도 게시										
	변경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이용 시간</th> <th>제한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평일</td> <td>07:00-23:29</td> <td>23:30-06:59</td> </tr> <tr> <td>주말·공휴일(법정 공휴일)</td> <td>접수 불가</td> <td>평일 23:30 ~ &lt;주말·공휴일&gt; ~ 06:59</td> </tr> </tbody> </table> 1) 1일이 휴일일 경우 첫 정상 영업일(법정 공휴일, 1월 1일 포함) : 마지막 평일 23:30~06:59 대여신청 제한 2) 대여 종류별 배정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소진시 TP 홈페이지에 “대여 마감 안내” 별도 게시			구분	이용 시간	제한 시간	평일	07:00-23:29	23:30-06:59	주말·공휴일(법정 공휴일)	접수 불가
구분	이용 시간	제한 시간										
평일	07:00-23:29	23:30-06:59										
주말·공휴일(법정 공휴일)	접수 불가	평일 23:30 ~ <주말·공휴일> ~ 06:59										
□ 제313호 개정	기존	□ 제313호 서식 생활자금대여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항목 : 주민등록번호 - 서면 동의시 중요한 내용의 강조 표시 없음										
	변경	□ 제313호 서식 생활자금대여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정 - 근거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항목 삭제 - 서면 동의시 중요한 내용의 강조 표시 - 제313호 개정 관련 _ 제301호 생활자금 대여신청서, 제311호 생활자금대여 상환 기간 조정 신청서, 제314호 개인회생 공제 대여 신청서 서식 개정										

※ 의미와 내용의 명확성을 위한 변경 사항은 제외

## Ⅱ. 2024년 생활자금대여 업무처리 기준

### 1 생활자금대여 개요

#### 가. 사업목적

- 생활자금대여를 통하여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 나. 관련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관 제27조 (후생·복지 증진) 및 대여규정

#### 다. 대여 브랜드(Loan) 및 BI

- 인생 계획에 맞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대여 서비스



### 2 대여 일반기준

#### 가. 대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적용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대여규정 제2조)
  - 재직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및 (조기)퇴직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 나. 대출 재원

- 대출규모 : 해당연도 예산금액 범위 내
- 운영방식 : 월별 배분

(단위:억 원)

예산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310	710	6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11.3%	9.5%	7.9%	7.9%	7.9%	7.9%	7.9%	7.9%	7.9%	7.9%	7.9%	7.9%

※ (월별 배정 예산 소진) 해당 월 대여사업 중단 / (월별 배정 예산 미소진) 익월 자동 이월

- 대여 종류별 예산 배정 비율 산정 내역

(단위: 억 원)

구분	재직자 생활자금대여	행복나눔대여	수급자 생활자금대여	합계
금액	5,048	947	315	6,310
비율	80%	15%	5%	100

○ 재직자 생활자금대여 생애 최초 대여자 예산 배정 비율 산정 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최초 대여자	기대여 이력이 있는 자
금 액	1,514	3,534
비 율	30%	70%

다. 생활자금 대여종류

대여종류	적용 대여 종류
일반 생활자금대여	재직 교직원 및 수급권자, 개인회생 공제대여
단기재직자대여	재직기간 1년 이상, 퇴직급여 예상액이 2천만원 미만인 교직원
행복나눔대여 (11종)	① 신혼대여 ② 미취학 자녀대여 ③ 2자녀 이상 양육대여 ④ 든든(장애)대여 ⑤ 한부모가정 대여 ⑥ 노부모 부양대여 ⑦ 육아휴직 대여 ⑧ 질병휴직 대여 ⑨ 자녀결혼 대여 ⑩ 직무상 요양대여 ⑪ 다문화 가정

라. 대여한도

○ 연간 대여 누계액

구 분	재직자 생활자금대여	행복나눔대여	수급자 생활자금대여
금액	1억 원	3천만 원	3천만 원

- ※ 1. 연간 대여 누계액은 당해 연도에 이용 가능한 대여 신청액의 누계액임
- 2. 재직자 생활자금대여 연간 누계액은 행복나눔대여 신청액 포함임

○ [재직자] 대여한도

세부내역
공통

- 대여한도는 퇴직급여 예상액\* 1/2 이내에서(최대 6천만원)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 \* 퇴직급여 예상액이란 “퇴직일시금+퇴직수당” 을 의미함
  - \*\*공단 채무액이란 “생활자금대여 잔액 + 미납부담금 등” 을 의미함
- 예시1) 퇴직급여 예상액 1/2이 9,000만원, 공단 채무액 3,000만원(생활자금1,000만원+미납부담금2,000만원)인 경우
  - ⇒ 3,000만원(대여가능액) = 6,000만원(한도액) - 3,000만원(채무액)
- 예시2) 퇴직급여 예상액 1/2이 5,000만원, 공단 채무액 3,000만원(생활자금1,000만원+미납부담금2,000만원)인 경우
  - ⇒ 2,000만원(대여가능액) = 5,000만원(한도액) - 3,000만원(채무액)
- 월 상환금의 합계액(상환이 시작되지 않은 학자금의 월상환금은 제외)이 본인 기준 소득월액 1/2 이내
- 대여별 최대한도액은 기 생활자금(일반 생활자금, 단기재직자, 행복나눔) 대여금액 포함
-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최소 1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
- 재임용 후 재직기간 연금합산 승인을 받은 교직원은 예상 연금월액 36배의 1/2

**일반 생활자금대여**

- 재 직 자 : 최대 6,000만원 이내

**단기재직자 대여**

-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퇴직급여 예상액 범위내)
  - 단기재직자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며, 퇴직급여 예상액이 2천만원 미만인 교직원” 을 의미함
  - 예시1) 퇴직급여 예상액 1,600만원이면 일반대여 800만원, 200만원 보증대여 가능
  - 예시2) 퇴직급여 예상액 800만원이면 일반대여 400만원, 400만원 보증대여 가능

**행복나눔대여**

-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
- 전년도 말일까지 상환 완료자 재대여 가능(단, 재대여 시점의 자격요건이 유지 될 경우에 한정)
- 상환기간 조정 대상 제외
- 행복나눔대여 교직원이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거나 폐지 또는 종료에 따른 정산시에도 행복나눔대여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산
- 퇴직급여 예상액 1/2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1/2초과 금액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 설정시 3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 예시) 퇴직급여 예상액 1/2이 1,000만원인 경우, 2,000만원 보증보험 설정시 3천만원까지 대여 가능

**개인회생 공제대여**

- 한도액 : 대여 결정 심사일 기준 일시상환액
  - ※ 대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여 한도액의 범위 내
- 개인회생 절차 폐지 또는 면책된 교직원
  - ※ 1. 회단 사건인 경우에는 면책 이후에 개인회생 공제대여 가능
  - 2. 국고학자금대여는 생활자금대여 신청금액에서 공제를 원하는 경우만 허용  
(보증보험설정 금액 및 연체 내역 등에 따라 개인회생 공제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3. 연금수급권자 생활자금대여 제외

○ [수급자] 대여한도

**일반 생활자금대여**

- 연금수급자 : 최대 1,000만원 이내
- 월 상환금의 합계액이 연금월액 1/2 이내

**마. 이자율**

구분	세부내역		
이자율	□ 일반 생활자금대여, 단기재직자, 연금수급자대여		
	- 이자율 : 한국은행 공표 가계대출(신규 취급액) 금리 적용		
	□ 행복나눔대여		
	- 이자율 : 일반 생활자금대여 이자율에서 1%p 범위 내에서 낮게 조정		
	□ 대여 이자율 조정시기 및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조정시기	기준금리	적용기간
	1월1일	전년도 10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1월1일 ~ 3월31일
	4월1일	당해년도 1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4월1일 ~ 6월30일
	7월1일	당해년도 4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7월1일 ~ 9월30일
	10월1일	당해년도 7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10월1일 ~12월31일
연체율	○ 생활자금대여(행복나눔대여)이자율 + 3%p 적용		

## 바. 대여금 지급 및 상환방법

구분	세부내역
대여지급	□ (대여지급) 대여 신청서 접수 후 당일 또는 다음날(금융기관 휴무일 제외) 입금조치
정규상환	□ (정규상환) 대어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 상환방법은 ① 원리금균등 분할 ②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을 대여 신청 시 선택 - 이자 = 대여 잔액 × 대여 이율 × 해당 일수 / 365일 (윤년인 경우 366일)

## 사. 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분	세부내역
재직기간/ 한도제한	□ 재직기간 1년 미만 또는 대여한도액 100만원 미만(보증보험 불가) - 퇴직급여 예상액 1/2 이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한도초과	□ 퇴직급여 예상액 1/2 보다 채무액 등이 많은 경우 - 퇴직급여 예상액 1/2 ≤ 생활자금대여 잔액 + 미납부담금 등 □ 월상환 합계액이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 상환이 시작되지 않은 학자금의 월 상환금 제외 □ (연금수급자) 연금지급 전액 정지 또는 연금월액 1/2 초과하는 경우
휴직자	□ 휴직 또는 휴직 예정인 교직원 - 생활자금 대여상환 확약동의서(310호)를 제출한 경우 가능
급여 환수자	□ 급여 환수 조치 완료 전까지 대여 제한
기관체납	□ 학교기관의 장이 소속 교직원의 부담금, 대여상환금 등을 장기간 정수 및 납부하지 아니하여 대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학교기관 소속 교직원
개인체납	□ 부담금, 대여상환금의 체납 등으로 대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인회생	□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 - 단, 폐지·면책 후 첫 달 고지분이 해당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 대여 한도 내에서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제대여 가능
연금연계 수급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 -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급여 사전청구자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 사전 청구자 - 사전 청구일부터 퇴직일까지
분할연금 수급자	□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였던 교직원의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연금을 받는 수급자
기타	□ 대여규정 또는 기준 등 기타 제반 사정에 따라 대여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 대여 종류별 대출요건 및 증빙서류

- 대여 신청서
  - (공통) 제313호 서식 생활자금대여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재직교직원) 제301호 서식\_일반 생활자금대여, 단기재직자 대여, 행복나눔대여 공통
  - (연금수급자) 제306호 서식
- 증빙서류는 대여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은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 가. 행복나눔대여

구분	대출요건	증빙서류
신혼대여	□ 결혼 예정 및 신혼 교직원 - 결혼 전 6개월, 후 2년 이내	□ 결혼 전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결혼 후 : 혼인관계증명서
미취학 자녀 2자녀 이상 양육대여	□ 만 6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교직원 □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만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인 교직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든든대여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본인, 배우자)이 장애인인 경우 - 교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을 주민등록상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 으로 부양(등재)하여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 공통 : 장애인증명서(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 장애인증의 경우 앞·뒷면(병원 진단서 불인정) 〈배우자·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교직원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1.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변동일 포함 - 배우자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1.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변동일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증)은 대여신청 당시 장애등급 유효기간 내 서류에 한정
한부모 가정대여	□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중인 교직원 - 현재 만 19세 미만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교직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 당시 자녀와 함께 등재
노부모 부양대여	□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교직원 - 교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직계존속(만 65세 이상자)을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등재)하고 있는 경우 ※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만 65세 이상자, 조부모 포함)	□ 교직원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교직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변동일 포함
육아휴직 대여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교직원 ※ 공단 신분변동(휴직) 신고자	□ 상환확약 동의서(제310호)
질병휴직 대여	□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교직원 ※ 공단 신분변동(휴직) 신고자	□ 질병휴직 인사발령문 사본 (질병휴직 사실 기재필수) □ 상환확약 동의서(제310호)
다문화가정 대여	□ 다문화 가정(교직원의 국제결혼) 교직원 - 현재, 부부가 국내에 거주 중인 국제결혼 (혼인시점)가정으로 부부 중 한쪽이 한국인 으로 구성된 가정	□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귀화한 경우 : 기본증명서 추가
자녀결혼	□ 자녀가 결혼하는 교직원 - 자녀결혼 전·후 6개월 이내 교직원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 전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결혼 후 : 혼인관계증명서
직무상 요양	□ 동일한 직무상 재해로 인하여 공단으로 부터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 기간(연장기간 포함)중에 있는 교직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른 요양기간	□ 없음

## 나. 생활자금대여

구분	대출요건	증빙서류
일반 생활자금 대여	<input type="checkbox"/> 재직자 - 퇴직급여 예상액 1/2이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최대 6천만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조기)퇴직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 대역상환금 월 합계액이 연금월액의 1/2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 (최대 1천만원) - 연금 개시월의 다음달 1일부터 대여 신청 가능	<input type="checkbox"/> 보증보험증권(설정 대상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보증보험증권 설정이 필요 없는 경우 - 만70세 미만인 연금수급자가 연금법상 만70세 미만의 유족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li> <li>• 유족이 배우자가 아닌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li> </ul>

## 다. 단기재직자

구분	대출요건	증빙서류
단기재직자 대여	<input type="checkbox"/> 퇴직급여 예상액이 2천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재직기간 1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자에 한해 보증보험증권 발급

## 라. 대여형태(공제·예약·보증보험설정 대여)

대여형태	세부내역
공제대여	<input type="checkbox"/> 일반 생활자금대여를 행복나눔대여로 전환하는 공제대여만 실행함
예약대여	<input type="checkbox"/> 해당 월 내 예약일 선택 <input type="checkbox"/> 제외대상 : 보증보험 설정자, 행복나눔대여 ※ 증빙서류 보완 등의 사유 발생시 입금이 지연될 수 있음
보증보험 설정대여	<input type="checkbox"/> <b>대여한도가 부족하거나 기타 보증이 필요한 경우</b> - (단기재직자) 퇴직급여 예상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행복나눔대여) 퇴직급여 예상액 1/2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연금수급자) 하단 ① ~ 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경우 ② 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③ 연금법상 유족의 최저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④ 외국국적 등의 사유로 구비서류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input type="checkbox"/>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증권발급은 TP 대여 신청 시 진행 (p.18 참조)

## 4 대여신청 및 지급 업무처리

### 가. 대여 신청기간

구분	이용 시간	제한 시간
평일	07:00~23:29	23:30~06:59
주말·공휴일(법정 공휴일)	접수 불가	평일 23:30 ~ <주말·공휴일> ~ 06:59

- 1일이 휴일일 경우 첫 정상 영업일(법정 공휴일, 1월 1일 포함)  
: 마지막 평일 23:30~06:59 대여신청 제한
- 2) 대여 종류별 배정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소진시 TP 홈페이지에 “대여마감 안내” 별도 게시

### 나. 대여신청 절차 및 방법

#### ○ 신청방법

- 인터넷(TP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한 대출 신청  
(로그인 및 전자서명을 위한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필요)
- 우편신청, 공단 내방 신청 가능

#### ○ 인터넷 대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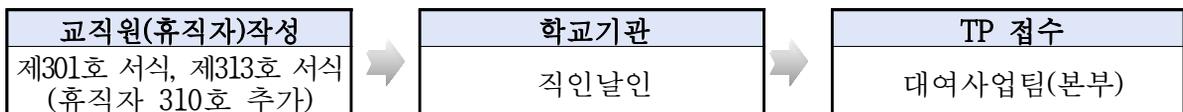


#### ○ 모바일앱 대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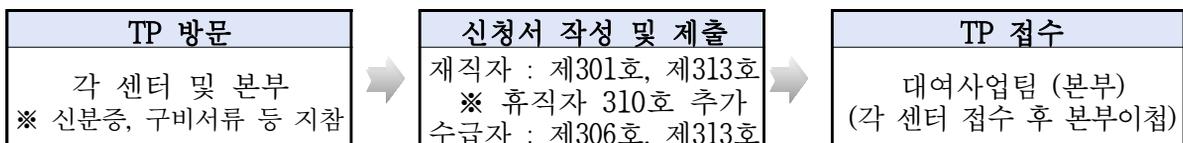
#### ○ 우편 대여 신청

- 재직 교직원 : 제301호 서식, 제313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교기관 직인날인 후, 대여사업팀(본부)로 우편발송(단 휴직 교직원은 제310호 서식 추가 작성)
- 연금 수급자 : 제301호 서식, 제313호 서식 작성 후 우편발송 신청



#### ○ 공단 방문 대여 신청

- 교직원 등이 공단 본부 및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직인 불필요)



## 다. 대여신청 시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환기간은 “대여금액별 상환기간” 이내 선택 가능</li> <li>□ 단기로 상환기간 설정 시 월 상환 합계액이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2을 초과하여 대여가 불가능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대여의 월 상환금 합계액에는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국고 학자금대여 월 상환금 제외</li> </ul> </li> <li>□ 공단 홈페이지(www.tp.or.kr) 회원에 가입한 교직원 중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홈페이지 “회원 정보” 수정</li> </ul>						
연금수급자 및 유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 후 연금수급자 대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금개시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대여 신청 가능</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생활자금대여 신청 불가</td>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333366; color: white;">생활자금대여 신청 가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2년 12월 퇴직·퇴직수당청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23년 1.25일 연금개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23년 2.1일</td> </tr> </tabl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수급자 사망 후 연금법상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유족연금 수급자들의 대여 신청액 총합은 1,000만원 초과 불가</li> </ul>	생활자금대여 신청 불가		생활자금대여 신청 가능	22년 12월 퇴직·퇴직수당청구	23년 1.25일 연금개시	23년 2.1일
생활자금대여 신청 불가		생활자금대여 신청 가능					
22년 12월 퇴직·퇴직수당청구	23년 1.25일 연금개시	23년 2.1일					
분할연금에 따른 대여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연금 수급자의 경우 퇴직교직원의 대여잔액 또한 분할연금에 상응하는 비율로 배우자에게 분할                예) 연금분할 후 연금월액의 비율이 6:4일 경우 대여 분할비율도 동일하게 6:4로 적용</li> <li>□ 분할연금 수령자 사망 시 분할연금수령자의 대여잔액은 퇴직연금 수급자 혹은 유족연금수급자에게 다시 이관됨</li> <li>□ 혼인기간의 대여만 분할하며, 신청구시 재직자 생활자금대여는 원 교직원 상환이 원칙 (퇴직급여에서 공제 후 분할지급)</li> </ul>						
대여의 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대여금액이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대여예산 규모를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대여를 중지                「대여규정」 제11조 제1항-대여의 중지 및 제한</li> </ul>						
인터넷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족연금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편 및 내방 신청자에 한하여 대여신청 가능(인터넷 신청 불가)</li> </ul> </li> <li>□ 외국인 중 다음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좌 유효성 체크시 성명 자릿수 초과 및 영문≠한글 등에 따른 예금주 불일치의 경우 인터넷 신청 불가</li> </ul> </li> </ul>						

## 라. 대여지급 안내사항

### ○ 일반 생활자금대여 지급일

- 대여신청서 접수 후 당일 또는 다음날(금융기관 휴무일 제외) 입금 조치

구분	1차 지급 (12:30 전후 입금)	2차 지급 (15:30 전후 입금)
당일 오전 9:00 이전 접수	당일 1차 지급	-
당일 오전 9:00 ~ 오후 12:00 접수	-	당일 2차 지급
당일 오후 12:00 이후 접수	다음날 1차 지급	-
예약접수	예약일 당일 지급	

- ※ 1. 접수시간은 해당 부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 지급 제외일
  - 금융기관 휴무일, 공단 창립기념일(1.11.), 근로자의 날(5.1.), 기타 임시·대체 휴무일 (예 :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대체공휴일 등)

### ○ 행복나눔대여, 단기재직자, 연금수급자 대여 지급일

- 대여신청서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입금(약1~3일 소요)

- ※ 행복나눔대여, 단기재직자, 휴직자, 연금수급자 대여의 경우, 증빙서류 보완 또는 보증보험 설정 등의 사유로 입금이 지연될 수 있음

### ○ 대여지급 안내

- 입금 조치 이후 해당 교직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전송
- 지급 (대여 및 급여) 금융기관

구분	은행 (24개 기관)	증권사 (21개 기관)
ㄱ	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교보증권
ㄴ	아이엠뱅크, 도이치은행	대신증권, DB금융투자
ㄷ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대우
ㄹ	부산은행	부국증권
ㅅ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한, 신한은행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ㅇ	우리은행, 우체국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안타증권
ㅈ	전북은행, 제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ㅋ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케이프투자증권(구 LIG투자증권)
ㅎ	한국씨티은행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H	HSBC은행	
I	IBK기업은행	
K	KEB 하나은행, KDB 산업은행	KB증권(구 현대증권)
N	NH농협	NH투자증권
S	SC제일은행	SK증권

- ※ 21개 증권사의 수시 입출금 계좌(CMA계좌)만 입금이 가능

- ※ MMF·신탁통장·휴면계좌·입금한도 제한계좌, 증권사 연결계좌(가상계좌) 등은 입금 불가

## 5 대여상환 업무처리

### 가. 대여상환 일반기준

#### 1)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

##### ○ 상환기간(「대여규정」 제12조)

- (재직교직원) 금액별 최장 13년(거치기간 3년 포함) 범위에서 연 단위 선택
- (연금수급자) 금액별 최장 5년(거치기간 없음) 범위에서 연 단위 선택

구분	대여금액	상환기간	
		원리금균등 분할	거치후 원리금균등 분할
재직 교직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7년 이내	2년 거치 5년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0년 이내	3년 거치 7년
	5,0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하	13년 이내	3년 거치 10년
연금 수급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년 이내	없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5년 이내	

##### ○ 상환방식

구분	상환금액
원리금균등 분할	□ 대여총액을 상환기간(횟수)에 따라 매월 균등한 원리금을 상환
거치 후 원리금균등 분할	□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 거치기간 종료 이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대여금 상환 중 대여한도 초과자에 대한 조치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소득월액 감액 등의 사유로 상환 중인 대여 잔액이 현재 퇴직급여 예상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내에 해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초과분 상환 유예</li> <li>- 1년 이내에 해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 <b>부분상환 또는 상환기간 조정</b> 등을 통하여 초과분 해소조치</li> <li>- 퇴직자의 경우에는 <b>전액 상환조치</b></li> </ul> </li> </ul> |
|--|

## 2) 상환종류별 상환 방법

### ○ 정기상환(「대여규정」 제13조)

구분	세부내역
상환금액	<p>□ 교직원이 선택한 상환방식에 (① 원리금균등분할 ②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 따라, 이용일수 기준으로 원(리)금 계산</p> <p>- 1회차 상환금액은 대여 일수의 차이로 다음 월의 월 상환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월 상환금은 변동됨</p> <p>※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월 상환원리금의 이자 및 원금 계산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a) = 대여 잔액(b) × 대여 이율 × 해당 일수 / 365일 (윤년인 경우 366일)</li> <li>○ 원금(c) = 월 상환원리금(d) - 이자(a)</li> <li>○ 납부 후 대여 잔액(e) = 납부 전 대여 잔액(b) - 원금(c)</li> </ul>
상환방법	<p>□ 대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부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p> <p>- 학교기관은 봉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연금업무대행 은행에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납부</p> <p>①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통지서 출력 (납부은행 선택, 가상계좌로 입금)</li> <li>- 해당 연금업무대행 은행지점 창구에서 납부</li> </ul> <p>② 전자납부하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계좌이체</li> <li>- 가상계좌에 의거 ATM기나 폰뱅킹으로 계좌이체 (정기상환금 납부 전 이체한도를 확인한 후 납부, 분할입금 불가)</li> </ul> <p>③ 자동이체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자동이체신청서[제119호 서식] 작성 및 제출</li> <li>- 자동이체일 이전 이체계좌 잔액 확인</li> </ul>
월상환금 고지	<p>□ 연금지원시스템으로 학교기관 고지 (미가입 기관 우편 발송)</p> <p>- 매월 5 ~ 10일 사이</p>
연체료부과	<p>□ 납부기한 경과 시 급여일 익일 부터 지연 납부일까지 연체이자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체이자 : 연체금액 × 연체이율 × 지연일수 / 365일 (윤년인 경우 366일)</li> <li>- 연체이율 : 생활자금(행복나눔)대여 이자율 + 3%p</li> </ul>

### 정기상환시 유의사항

- ① 정기상환 고지 후 일시상환 등의 사유로 정기 상환금을 납부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정정내역 입력’ 후 ‘대여상환금 납부통지서’ 재발행
  - ②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 시, 차기 월 연체이자 부과
  - ③ 납부은행 변경 시, 납부서 재발급
  - ④ 전자납부(대여상환금의 인터넷뱅킹 등)는 20:00까지 입금 가능
- ※ 월상환금 정기 고지일(매달 5일 ~ 10일 중 1일)은 18:00까지 입금 가능

- 대여상환금 고지 및 관련 유의사항

구분	세부내역
대여상환금 고지 란?	<p>□ 대여금에 대한 1개월간(학교기관 급여일 익일부터 익월 급여일 기준)의 원리금을 산정하여 월상환 예정금액을 학교기관에 통지하는 것</p>
최초고지	<p>□ 첫 회 고지는 <b>대여 지급 익일부터 급여일까지</b>의 원리금을 산정하여 고지하며, 첫 회 가감이자는 <b>15일 이내로</b>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p> <p>① <b>대여 지급일과 급여일 차이가 15일 미만</b> : <b>대여 지급일 다음월 최초고지</b>          - 대여 지급일과 당월 급여일 차이가 15일 미만이면 다음 급여일이 속하는 월에 최초 (첫회) 고지: <b>상환 시작일 다음 월</b></p> <div data-bbox="404 600 1365 86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v> <p>② <b>대여 지급일과 급여일 차이가 15일 이상</b> : <b>대여지급일 당월 최초고지</b>          - 대여 지급일과 당월 급여일 차이가 15일 이상이면 당월 급여일이 속하는 월에 최초 (첫회) 고지: <b>상환 시작일 당월</b></p> <p>※ 단, 대여 지급일과 급여일의 차이가 15일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당월 고지일자를 지나 대여를 받은 경우, 상환시작일은 다음 월</p> <div data-bbox="404 1137 1365 142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v>

**[참고]** 자동이체(신규·변경·해지) 신청방법

-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자동이체 신청서(제119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우편 또는 FAX 신청 가능, 신청 후에는 반드시 홈페이지 학교기관 연금 업무지원시스템으로 로그인 후 [부담금] → [자동이체 정보조회]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설된 통장이어야 하며,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된 통장은 사용 불가
- ※ 예금주 “학교기관 명”, 신청서식에 학교기관의 직인날인
- ※ 미납분이 있을 경우 자동이체 신청 및 변경(해지)이 되지 않으며, 당월분까지 수납 완료가 되면 익월부터 적용됨
- ※ 자동이체 처리팀 : 재직자 관리팀(☎1588-4110)

○ 임의상환(「대여규정」 제14조)

구분	세부내역
상환종류	<p>□ (일시상환) 상환 예정일까지 계산된 미납 원금과 이자 합계액            - 이자 : 대여잔액×대여이율×해당 일수 /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p> <p>□ (부분상환) 대여잔액 중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            - 부분상환 후 다음월 부터 대여 잔액과 잔여 상환기간으로 월 상환금을 재산정하여 정기상환 (상환기간 불변)</p>
상환방법	<p>□ 교 직 원 : 발급 ⇨ 대여일시/부분상환 납부서에서 발급            □ 학교기관 : 납부서 발급 및 교직원 교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re>           graph TD             A[TP 로그인] --&gt; B[일시·부분 상환 납부서]             B --&gt; C[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C --&gt; D[해당 대여건 선택]             D --&gt; E[공제여부 확인]             E --&gt; F["&lt;선택&gt; ① 일시상환 ② 부분상환"]             F --&gt; G["&lt;일시상환 선택&gt; ① 납부일 입력 ② '계산' 클릭"]             F --&gt; H["&lt;부분상환 선택&gt; ① 납부일 입력 ② 상환원금 입력 ② '계산' 클릭"]             G --&gt; I["① 납부은행 선택 ② 확인 선택"]             H --&gt; I             I --&gt; J["① 납부내역 확인 ② 납부서 발급 ③ 알림톡 발송"]           </pre> </div> <p>□ 교직원 납부            - 은행납부 : 발급된 납부서로 연금업무 대행 은행지점 창구에서 납부            - 전자납부 : 가상계좌 이용, 인터넷 결제서비스 또는 ATM기 등의 방법으로 이체</p>

**일시상환 유의사항**

- ① 학교기관에서 인터넷 로그인 후 “일시상환 납부서” 를 발급해야 납부가 가능하며, 동일 건으로 대여상환금(일시/부분 상환) 납부서를 재발행 시 가상계좌번호가 갱신되므로 최종 발급한 납부서로 교직원에게 안내
- ② 학교기관에 고지된 당월 월상환금을 “공제” 로 체크한 경우에는 봉급지급 시 원천 공제 해야 하며 “공제” 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교직원의 봉급지급 시 대여 상환금을 공 제하지 않고 (정기 상환금 정정납부 조치) 해당 월 대여상환금을 납부해야 함
- ③ 대여상환금 고지 후 신분변동(퇴직, 전·출입) 및 일시상환 등의 사유로 정기상환금을 납부 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대여정보 ⇨ 대여금 납부서 등 출력/조회 ⇨ 대여상환금 내역정정 및 통보서 출력**에서 ‘**납부정정**’ 사항을 입력한 후 ‘**대역상환금 납부통지서**’ 출력
- ④ 일시상환(부분상환 포함) 금액이 본인의 전자납부(인터넷뱅킹 등) 이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체 한도를 증액한 후 납부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납부 (1개 가상계좌로 분할 입금 불가)
- ⑤ 대여상환금은 지정 은행에 납부, 납부지정일 경과 시 납부통지서 재발급

○ 즉시상환(「대여규정」 제15조)

구분	세부내역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여를 취소하고 상환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하게 대여를 받았을 때</li> <li>- 차용인이 상환을 3개월 이상 태만히 하였을 때</li> <li>- 기타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등</li> </ul> </li> </ul>
상환방법	□ 즉시 상환통보서에 따라 상환할 금액을 은행창구 및 전자납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한이익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시상환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대여기간에 불구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대여금 전액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li> </ul> </li> </ul>

○ 계속상환(「대여규정」 제16조)

구분	세부내역
사유	□ 퇴직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공단의 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었을 경우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일로부터 재임용된 기간 동안 미납된 월상환금 (원리금 및 <b>연체이자 포함</b>)을 재임용 후 처음 정기 상환할 때 전액 상환</li> <li>□ 다음 월부터 정기상환 방법에 의함</li> </ul>

○ 퇴직 등의 상환(「대여규정」 제17조)

구분	세부내역
사유	□ 차용인이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미상환금을 일시 상환</li> <li>□ 대여 미상환금(원금,이자,연체이자)에 대해 퇴직급여·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b>일시 공제함</b>으로써 상환에 갈음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의 경우 미상환금 및 연체이자의 정산은 상환완료일 또는 퇴직급여청구서 등의 공단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li> </ul> </li> <li>□ <b>퇴직수당만 청구하는 경우</b>, 대여잔액 &gt; 퇴직수당이라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직기간 10년 미만 교직원 및 <b>퇴직 후 재임용 교직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족분에 대하여 선 상환 후 퇴직수당에서 잔액공제</li> </ul> </li> <li>②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여 공제 후, 잔여액은 향후 퇴직급여 청구시 공제지급 또는 연금지급 결정 전에 선 상환 후 연금지급 결정</li> </ul> </li> </ol> </li> </ul>

○ 기타 상환

구분	세부내역
휴직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 당시와 같이 정기상환 방법에 의해 계속 상환</li> <li>□ <b>(휴직 교직원)</b>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월 상환금을 매월 봉급일 까지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li> <li>□ <b>(학교기관의 장)</b>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교직원의 월 상환 원리금을 징수 하여 공단이 정한 기한 이내에 납부</li> </ul>
유족연금 전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연금에서 생활자금대여를 공제·상환중에 있던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으로 전환될 경우</li> <li>□ <b>상환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족연금 정산액(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 대여 잔액보다 많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여 미상환 잔액을 공제·정산한 후 지급</li> </ul> </li> <li>- 유족연금 정산액이 대여 잔액보다 적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미상환 잔액을 전액 일시 상환. 다만 유족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종전 망인의 미상환 잔액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 설정에 의한 유족연금 수급자의 대여로 전환할 수 있음 (유족의 신규대여로 망인의 종전 대여를 공제·정산처리)</li> </ul> </li> </ul> </li> </ul>
연금정지 또는 수급권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미상환 전액 일시상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li> <li>ex) 연금수급자 재임용의 경우(사학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li> <li>- 사망, 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li> </ul> </li> </ul>
상환금액 (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리금 또는 연체이자의 정산은 상환 완료일 또는 퇴직급여 청구서 등의 공단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퇴직한 교직원은 종전 규정에 따름</li> </ul>

3) 이자 기산일 기준

○ 퇴직자 이자 및 연체이자 정산기준

~ 2014.11.30		2014.12.1. ~ 2022.5.31.		2022.6.1. ~	
이자	연체이자	이자	연체이자	이자	연체이자
퇴직일 까지	-	상환 완료일 또는 퇴직급여청구서 등의 접수일까지	-	① 상환 종료일 ② 퇴직급여청구서 등의 접수일 ③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 먼저 도달한 날까지	퇴직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의 익일부터 상환 완료일 또는 퇴직급여청구서 등의 접수일 까지

※ 2014.12.1.~2022.5.31. 퇴직자 중 퇴직급여 미 청구자(미상환 잔액이 있는 자)의 연체이자 계산은 2022.7.1.~상환 완료일 또는 퇴직급여청구서 등의 접수일

○ 정기상환 납부기한 이후 수납 시 연체이자 계산

- 납부기한 : 봉급일 기준 3일 이내
- :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봉급일부터 지체한 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 납부
- ex) 1. 봉급일 25일, 납부기한 28일, 29일 수납시 25~29일까지의 연체이자 납부
- 2. 봉급일 25일, 휴무일 28일, 29일인 경우 : 납부기한 30일

## 나. 대여 상환기간 조정

### 1) 상환기간 조정 개요

○ 기존 대여의 상환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는 제도

구분	세부내역
조정대상	<input type="checkbox"/> 일반 생활자금대여를 보유하고 있는 재직 교직원 - <b>상환기간 연장</b> • 현재 상환중인 대여 건 (대여번호 별로 관리) : 원리금균등상환 ⇨ 거치상환 및 원리금균등상환 연장 가능 : 거치상환 ⇨ 거치상환 및 원리금균등상환 연장 가능 - <b>상환기간 단축</b> • 모든 대여 건 (대여한도 초과건 포함)
신청횟수	<input type="checkbox"/> 매년 일반 생활자금대여 건별 1회 신청가능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우편 및 방문신청 시) - 상환기간 조정 신청서(제 311호 서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기타	<input type="checkbox"/> 상환기간 조정시 상환조정 업무처리 완료일이 속하는 당월 급여일 까지 일시상환이 불가함

### 2) 상환기간 조정 한도

○ **현행 대여 정규 상환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 대여 잔액 : 당월 대여 상환 고지금액 차감 후의 원금잔액 기준
- 해당기간 범위 내에서 년 단위로 선택 가능
- 월 상환금이 본인 기준소득월액 1/2 이내로 조정 가능

### 3) 상환기간 조정 기준일

○ 조정 신청 접수일 기준 고지된 금액 수납 후 잔액을 기준으로 접수 가능  
 예) 3월 고지 후 미수납일 시, 수납가정 후 잔액을 기준으로 접수 가능

### 4) 상환기간 조정 제외대상

구분	세부내역
한도액 초과 보유자	<input type="checkbox"/> 대여잔액이 현 한도액 (6,000만원) 이상인 교직원 (단, 단축에 한하여 기간 조정 허용)
최소 대여액 미만	<input type="checkbox"/> 신청일 당일 대여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교직원
휴직교직원	<input type="checkbox"/> 휴직 중인 교직원 (단, 상환확약동의서를 제출한 교직원에 한하여 허용)
보증보험 설정자	<input type="checkbox"/> 보증보험을 설정하여 대여를 신청한 교직원
연금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연금수급권자 중 대여를 신청한 교직원
체납	<input type="checkbox"/> 부담금, 대여상환금의 체납 등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공단의 모든 채무 포함) <input type="checkbox"/> 학교기관의 장이 소속 교직원의 부담금, 대여상환금 등을 장기간 징수 및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학교기관 소속 교직원
개인회생	<input type="checkbox"/>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교직원
행복나눔대여	<input type="checkbox"/> 행복나눔대여를 신청한 교직원

### Ⅲ. SGI 서울보증보험 증권 설정 프로세스 등

#### 1. 온라인 보증보험 설정

가. (교직원) 공단 대여신청 (※ 공단은 대여신청서 및 대여한도액 확인서 보험사 송부)

나. (공단 및 SGI서울보증) 교직원에게 보험설정 요청 안내

다. (교직원)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

※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 방법

- ①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http://www.sgic.co.kr)) 접속
- ②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클릭(화면 왼쪽 상단)
- ③ 약관 동의 체크,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동의함 클릭
- ④ 공동인증서 로그인 - 동의 완료

라. (서울보증보험) 설정(청약) 진행

마. (서울보증보험) 교직원에게 전자서명 요청 문자 발송(전자서명 절차 완료, 보험료 입금)

※ 전자서명 방법

- ①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http://www.sgic.co.kr)) 접속
- ② 전자서명 클릭(화면 상단)
- ③ 공동인증서 로그인
- ④ 증권번호(파란색 글씨) 클릭
- ⑤ 내용 확인 후 약관 동의, 기재 사항 기입 후 전자서명 클릭(보험료 필수 확인)
- ⑥ 공인인증 로그인→전자서명 완료
- ⑦ 보험료 입금(신한 325-81-60527207 서울보증보험)

바. (공단) 보험증권 출력 또는 진위여부 확인(보험사 홈페이지 출력 및 진위확인 18~19p참고)

사. (공단) 교직원에게 대여금 지급

#### 2. 오프라인 보증보험 설정

가. (교직원) 공단 대여신청 (※ 공단은 대여신청서 및 대여한도액 확인서 보험사 송부)

나. (교직원) 서울보증보험 지점 및 대리점 방문

※ 방문시 지참 서류

(본인 방문시) 신분증, 생활자금 대여신청서, 대여금 잔액 확인서

다. (교직원) 보증보험료 납부 및 보증보험증권 수령

라.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신청서 및 관련 서류, 보증보험증권 등 원본 서류 공단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으로 하며, 재직교직원 우편 신청시 대여신청서 학교장 직인 필요함 유의

마. (공단) 담당자 대여신청 심사 및 보증보험증권 진위여부 확인( 21p 참고)

바. (공단) 대여금 지급

### 3. 보증보험증권 출력 방법

※ 보험계약자가 서울보증 영업지점 또는 홈페이지에서 보험 가입시 안내받은 **증권번호와 사서함 번호를 이용하여 보험증권 인쇄 가능**

가. SGI보증보험 홈페이지 접속(www.sgic.co.kr)

나.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보험증권 사서함’ 메뉴 클릭[그림1]

※ 보험증권 사서함이란?

- 증권번호와 사서함번호를 이용하여 보험증권 인쇄가 가능한 서비스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공동인증 로그인 없이 인쇄 할 수 있음

- 증권번호 및 사서함번호는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보험증권 인쇄’ 항목의 증권번호와 사서함번호란에 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그림2]라. 보험증권 항목에 체크(☑) 후 인쇄

[그림1]



[그림2] 보험증권 사서함



#### 4. 보증보험증권 진위여부 확인

※ 보험계약자가 대여신청시 제출한 보험증권의 진위여부 확인 가능 메뉴로 공단은 보증보험 설정 대여신청자가 제출한 보증보험증권 서류진위를 확인하여야 함

가. SGI보증보험 홈페이지 접속(www.sgic.co.kr)

나.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MY SGI>업무지원>증권발급내용 조회 메뉴 클릭[그림1]

※ 증권발급내용 조회란?

- 증권번호와 보험계약자 고객 번호 및 피보험자 고객 번호를 이용하여 증권발급내용 자료가 조회 가능한 서비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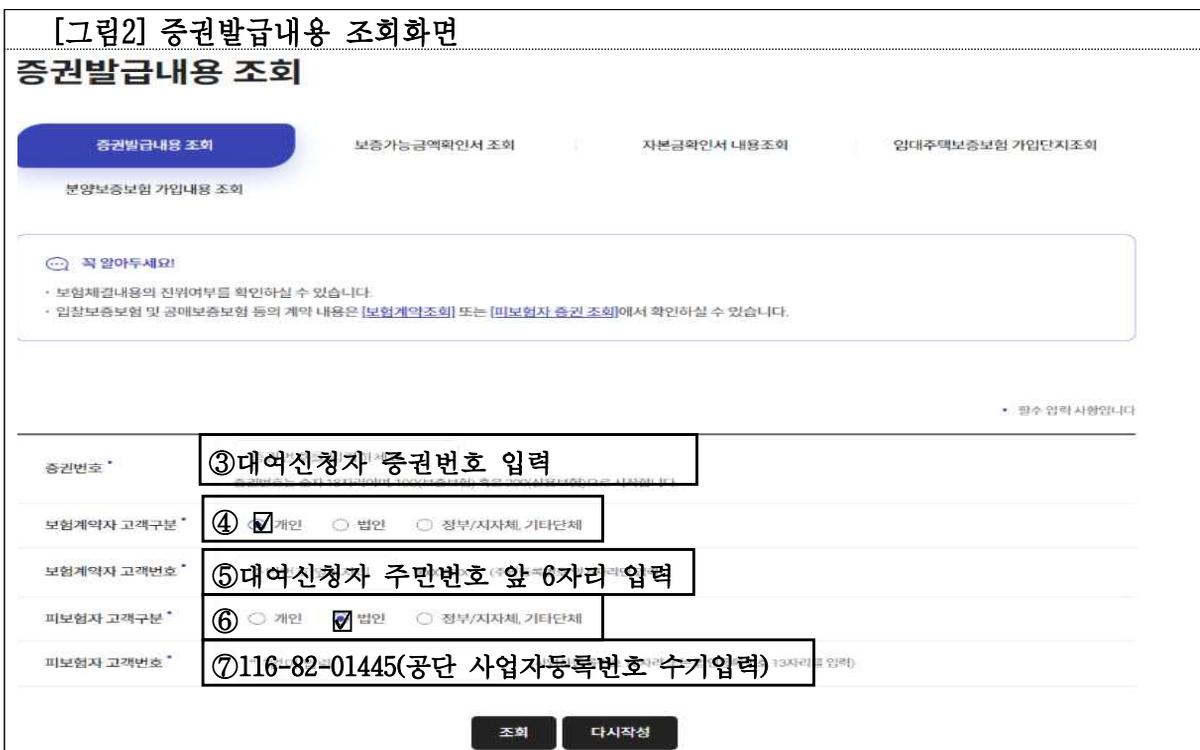
다. ‘증권발급내용 조회’ 항목에 증권번호 및 관련 사항을 입력 후 조회 메뉴 클릭[그림2]

라. 보증증권 설정내역 확인

[그림1] 서울보증보험 메인화면→증권발급내용 조회 메뉴 선택



[그림2] 증권발급내용 조회화면



## IV. 금융기관 협약대출

### 1. 재직자 협약대출

구분	세부내역
취급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KB 국민은행, NH 농협은행</li> </ul>
대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학연금법 적용 재직 교직원</li> <li>□ 금융기관 내규에 의해 대출 취급 제한을 받지 않는 교직원</li> <li>□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일 종류의 협약대출을 받지 아니한 교직원 (우리은행 제외)</li> </ul>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급여 예상액의 1/2범위 내에서 최고 8천만 원까지</li> </ul> </li> <li>□ KB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IBK 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급여 예상액의 1/2범위 내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li> <li>- 국고학자금대여 및 생활자금대여의 합계액이 퇴직급여 예상액의 1/2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하여 산정함. 단, kb국민은행의 경우 최종 대출한도는 교직원 연소득 100% 범위 이내로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신용대출 등)은 대출한도에서 차감됨</li> </ul> </li> <li>□ 대출한도는 타 은행 여신,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변동 가능</li> </ul>
대출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의 기준금리(MOR 또는 COFIX 등)에서 가산한 금리</li> <li>-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li> </ul>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장 10년</li> </ul> </li> <li>□ IBK 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장 5년</li> </ul> </li> <li>□ 퇴직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또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중 교직원이 선택</li> </ul>
대출금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li> <li>□ 교직원이 금융기관에서 동일 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 된 때 (우리은행 제외)</li> </ul>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별 퇴직급여 예상 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해당은행에 신청</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급여를 협약 대출은행으로 수령하여야 함</li> </ul> </li> </ul>

## 2. 수급자 협약대출

구분	세부내역
취급은행	□ 우리은행
대출대상	□ 사학연금 연금수급자 □ 금융기관 내규에 의해 대출 취급 제한을 받지 않는 교직원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단, 연금월액 환산액 100% 이내 □ 대출한도는 타 은행 여신,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대출금리	□ 금융기관의 기준금리(MOR 또는 COFIX 등)에서 가산한 금리 -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대출기간	□ 최장 10년
기타	□ 연금수급계좌가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어야 함 - 대여금 전액 상환 전에는 연금수급계좌 타행변경 불가

## 3. 협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 공단은 연도별 대여예산 제약으로 인한 사업 중단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시중 은행과 협약을 맺고 추가적인 대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 교직원의 퇴직급여 예상확인서 등의 발급을 통해 대출 실행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나,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대출 심사 등 중요 실무사항은 해당 은행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고객센터 번호	1588-5000 1599-5000	1588-9999 1599-9999	1588-2588 1566-2566	1522-3000 1661-3000

※구비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급여예상확인서  
(은행별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 V. 생활자금대여 홈페이지 메뉴 안내

### 1. 홈페이지 주소: [www.tp.or.kr](http://www.tp.or.kr) (또는 검색포털에서 사학연금 조회접속)

- 주요사업 → 대여사업 → 생활자금
- 홈페이지 → 연금서비스 → 연금업무지원시스템 → 대여신청 → 생활자금대여신청
- 홈페이지 → 자주찾는 연금메뉴 → 연금수급자, 재직자, 연금담당자 중 선택

### 2. 대여관련 사항 확인(로그인 필수)

메뉴명	하위 메뉴명
조회	<input type="checkbox"/> 대여기본 현황 → 대여번호별 기본현황, 보증내역, 대여한도액 등 조회
대여신청	<input type="checkbox"/> 생활자금대여 신청 ※ 생활자금 : 일반생활자금, 행복나눔, 단기재직자대여 등
	<input type="checkbox"/> 생활자금대여 상환기간 조정 신청
	<input type="checkbox"/> 월 상환금 조건표 현황 → 대여 금액별 상환원금 및 이자 조회
	<input type="checkbox"/> 대여신청 문서처리 현황 → 신청 단계별 대여처리 조회
대여상환	<input type="checkbox"/> 대여 일시/부분 상환납부서 발행

## VI 연금서비스 대여정보 목록

### 1. 홈페이지 ([www.tp.or.kr](http://www.tp.or.kr)) 접속 ⇨ 연금업무담당자 ⇨ 로그인 ⇨ 대여정보

구분	업무단위	업무내용
대여	대여월별납부통지서(일괄)	☐ 대여상환금 정기상환 납부통지서 출력
	대여정정 및 통지서출력	☐ 대여상환금 납부통지서 정정 납부 (퇴직자, 전출자 등)
	교직원별 대여현황	☐ 개인별 대여내역 및 보증내역 조회 ☐ 국고학자금대여 학생내역 조회 ☐ 대여 한도액 조회
	대여번호별 상세조회	☐ 대여건별 상환기간 등 상세내역 조회
	기간별 대여현황	☐ 학교기관 전체 교직원의 대여 종류별 처리 내역 조회
	대여잔액 집계현황	☐ 기관의 대여 종류별 건수 및 잔액 집계조회
	대여신청 내역출력	☐ 소속 교직원 대여 신청 내역 및 처리 상태 출력
	일시/부분상환납부	☐ 일시/부분상환 납부서 출력
	국고학자금 상환예정조회	☐ 국고학자금대여 상환예정자 확인
	월별 정기고지/수납현황	☐ 월별 고지 및 수납내역 조회
	대여상환금 개인별 납부명세서	☐ 소속 교직원 월별 대여고지내역 조회
	대여상환금 변동내역	☐ 교직원별 전월 대비 당월 대여상환금 비교
	대여상환금 신규 및 종결내역	☐ 당월기준 대여상환금 신규 및 종결 교직원 내역
	월상환금 조건표	☐ 대여금액 및 상환기간별 상환조건표

### 2. 자주찾는 업무

구분	세부내역
대여신청 처리여부 조회	☐ 기본현황 ⇨ 문서처리현황
학교기관 주소·전화 및 연금담당자 등 변경 신고	☐ 기본현황 ⇨ 정보변경처리 ⇨ 기관정보변경, 연금업무담당자변경 등

## VII 대여관련 서식

### ○ 생활자금대여 서식 사용

- 생활자금대여 서식 출력·사용 절차



※ 관련 서식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다음 페이지의 붙임 서식이용 외 홈페이지 서식 이용을 추천합니다.

### ○ 서식번호별 서식명

번호	서식명
301호	□ 생활자금대여 신청서(국문)
301호(영문)	□ 생활자금대여 신청서(영문)
306호	□ 연금수급자 생활자금대여 신청서
310호	□ 생활자금 대여상환확약 동의서
311호	□ 생활자금대여 상환기간 조정 신청서
312호	□ 대여금(생활/국고) 개별고지 신청서
313호	□ 생활자금대여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14호	□ 개인회생 공제 대여 신청서



<b>대여 한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급여예상액(퇴직일시금+퇴직수당) 1/2 이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생활자금대여 : <b>최대 6,000만원까지</b></li> <li>- 단기재직자대여 : 퇴직급여예상액 이내에서 <b>최대 1천만원까지</b></li> <li>- 행복나눔대여 : 퇴직급여예상액 1/2 이내에서 <b>최대 3천만원까지</b></li> </ul> </li> <li>※ 행복나눔대여는 예상퇴직급여 1/2 초과금액에 대하여 보증보험 설정 시 한도액까지 대여가능 단기재직자대여는 예상퇴직급여 1/2 초과액부터 예상퇴직급여액까지 보증설정시 예상퇴직급여액 까지 대여가능</li> </ul>
--------------	--

<b>대여요건 및 구비서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제313호 서식 생활자금대여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li> <li>■ 일반 생활자금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요건 : ① 연금법상 재직기간 1년 이상 ② 대여신청 한도액이 100만원 이상</li> <li>- 구비서류 : ① 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설정 대여 신청자에 한함), ②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사본(내방 신청자에 한함)</li> </ul> </li> <li>■ 행복나눔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함</li> </ul> </li> </ul>
--------------------	--

구분	신청요건	구비서류
<b>신혼자금 대여</b>	- 결혼 전 6개월, 결혼 후 2년 이내 교직원	- 혼인관계 증빙서류(결혼전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결혼후 : 혼인관계증명서)
<b>미취학자녀 대여</b>	- 만 6세이하 자녀를 부양중인 교직원 ※ 기한 내 우편소인 접수분까지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b>다자녀 대여</b>	- 2명 이상 자녀(만19세 미만 출생자 1명 이상)를 둔 교직원	
<b>튼튼(장애)대여</b>	- 장애인 : 본인,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본인, 배우자) ※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 직계존속 : 6개월 이상 부양	- 장애인증명서(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 (배우자,자녀)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존속)주민등록표등본(최근 6개월 이상 함께 등재)
<b>한부모가정 대여</b>	- 현재 자녀와 동거 중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만19세 미만 부양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신청당시 자녀와 함께 등재)
<b>노부모부양 대여</b>	- 교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직계존속 연령 : 만 65세 이상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 포함)	- 교직원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6개월 이상 등재) ※ 전입일/변동일 포함되도록 출력 -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6개월 이상 등재) ※ 교직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b>육아휴직 대여</b>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중인 교직원	※ 공단에 신분변동 미신고 시 학교기관에서 신고 후 신청
<b>질병휴직 대여</b>	- 교직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경우	- 질병휴직 인사발령문 사본
<b>다문화가정 대여</b>	- 현재, 부부가 국내에 거주중인 국제결혼(혼인시점)가정으로 부부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귀화한 경우 : 기본증명서 추가)
<b>자녀결혼</b>	- 자녀결혼 전·후 6개월 이내 교직원	- 가족관계 증명서, (결혼전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결혼후 : 혼인관계증명서)
<b>직무상요양대여</b>	- 동일한 직무상 재해로 인하여 공단으로부터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중에 있는 교직원	- 없음

<b>상환기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리금균등분할 : 대여총액을 상환기간(횟수)에 따라 매월 균등한 원리금을 상환</li> <li>■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 :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 거치기간 종료 이후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li> </ul>
-------------	---

구분	대여금액	상환기간	
		원리금균등 분할	거치후 원리금균등 분할
재직교직원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7년 이내	2년 거치 5년
	2,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0년 이내	3년 거치 7년
	5,000만원 이상 - 6,000만원 이하	13년 이내	3년 거치 10년

<b>이자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가계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연 4회(매 분기별) 변동금리</li> <li>■ 행복나눔대여의 경우 이자율 특례 적용(위에서 정한 이자율 보다 1%p 범위내에서 낮게 적용)</li> <li>■ 연체이자율 : 생활자금대여(행복나눔대여) 이자율 +3%p 적용</li> </ul>
------------	---

<b>유의사항</b>	
[대여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기간 1년 미만자 또는 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자</li> <li>■ 공단에 대한 채무액(국고대여 제외)이 퇴직급여예상액의 1/2을 초과하는 자</li> <li>■ 대여 시 월상환금합계액(상환중인 국고대여의 월상환금 포함)이 기준소득월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li> <li>■ 법인·개인부담금·대여상환금 등을 체납한 학교기관의 소속 교직원,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교직원</li> <li>■ 급여 사전청구자</li> </ul>	





## 약 정 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동법 시행령 및 공단의 정관과 대여규정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그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대여규정과 기준에 의하여 대여금의 상환 종료 시 까지 아래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매월 지급되는 연금월액 중에서 월상환금을 공제하는데 이의가 없음.
2. 원리금의 상환방법, 변동이율에 의한 대여 이자율의 적용, 원리금상환을 지체한 경우 연체이자 및 기한 이익의 상실 등 불이익 발생과 공단 대여규정에 의한 제반 대여조건을 인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임.
3. 본인은 대여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 귀 공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할 것에 동의 함.
4. 공단은 연금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대여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여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대여 지급액이 당해연도 정부 배정(월별 배정)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등)
5. 대여금 상환 중 연금 외의 소득 등으로 연금월액이 감소하여 대여상환금 월 합계액이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부분상환 등 공단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겠음
6. 사망, 연금수급권의 상실,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시상환하는데 이의가 없음

### 유의사항

1. 대여신청 제외자
  - 연금지급 정지자
  - 대여상환금 월 합계액이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분할연금수급자, 연금연계 수급자
2. 보증보험을 설정하지 않고 대여를 받은 경우, 유족의 사망 등으로 유족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여 잔액에 대하여 보증보험을 설정하여야 함
3. 보증보험 청약과 대여금 지급 절차
  - ※ 보증보험증권발급 : 대여 신청자의 대여금액, 대여기간 등에 의하여 보증보험증권 내용(증권 발급 수수료 등)이 결정이 됨으로 보증보험증권 발급 대상자(대여 신청자)는 실제 대여가능금액, 상환기간 등을 대여사업팀 담당자에게 확인(문의처 : 공단 컨택센터 1588-4110)하여 대여신청서 작성







## 약 정 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상환이행 등 약정서

위 본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53조의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관(제27조) 및 대여규정에 의한 대여 기준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그 내용이행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대여금의 상환 종료 시 까지 아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제1조(상환 등)

1. 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봉급 중에서 납부하여야 할 월 상환원리금을 학교기관의 장이 공제하고 공단에 납부하는데 동의함. 단, 본인이 휴직 등으로 인하여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월 상환원리금을 매월 봉급일까지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겠음.
2. 학교기관의 장은 차용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봉급 중에서 차용인이 귀 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월 상환원리금을 공제(휴직 등으로 봉급이 지급 되지 않는 교직원은 월 상환원리금을 징수)하여 귀 공단이 정하는 납부 기한 내에 틀림없이 납부하겠음.
3. 대여에 대한 상환액을 연체 할 경우에는 귀 공단에서 정하는 대출 연체이율(생활자금대여 이자율 + 3%P)로 상환하는데 이의가 없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받은 경우 귀 공단의 즉시상환 요구에 이의가 없음.
5. 대여금 상환 중 기준소득월액 하락 등의 사유로 예상퇴직급여액이 감소하여 대여미상환 잔액이 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한 경우, 상환기간 조정 혹은 한도 초과분에 대한 부분상환 등 공단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겠음.

#### 제2조(퇴직 등의 경우 상환)

1. 퇴직 등의 경우, 퇴직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 하여야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연금법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에 의하여 대여 미상환잔액을 퇴직급여(퇴직수당 포함) 또는 유족급여 등에서 감하여 지급받는데 이의 없음.
2. 퇴직 등의 경우 원리금 및 연체이자의 정산은 상환완료일 또는 퇴직급여 청구서 등의 공단 접수일로 함

#### 제3조(대여이율 등)

1. 대여결정서 상의 대여이율 및 월 상환원리금에 동의하고 이자율이 변동될 때에는 변동된 달부터 변동된 이율로 상환하겠으며,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 연체이자 납부기한이익의 상실, 소속기관 교직원에 대한 대여중지 등 제반 대여조건을 인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 임.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더라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금(원금, 이자, 연체이자)은 면책되지 않으며, 회생기간 동안 상환은 중지되나 이자는 계속하여 발생하는 채무임을 확인함.

#### 제4조(기타)

1. 대여로 인한 소송 발생 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2. 연금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대여조건 등을 변경하거나 대여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대여 지급액이 정부 배정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등).

## 관련 대여규정

제12조(상환기간) ①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며, 연단위로 한다.

1. 100만원 이상 : 3년 또는 1년 거치 2년
2. 500만원 이상 : 5년 또는 2년 거치 3년
3. 1000만원 이상 : 7년 또는 2년 거치 5년
4. 2000만원 이상 :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
5. 5000만원 이상 : 13년 또는 3년 거치 10년(신설 2012.09.21)

②제1항에 불구하고 연금수급자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1. 100만원 이상 : 3년
2. 500만원 이상 : 5년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신청이 있을 시 신청일 기준의 해당 대여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8.03.23.)

1. 조정대상 : 기존 대여 건을 가지고 있는 재직 교직원
2. 조정내용 : 거치기간 및 원리금균등 상환기간
3. 조정횟수 : 매년 전체대여 건별 1회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 등에 대하여는 상환기간조정을 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03.23.)

1. 제11조제2항에 따르는 대여 신청 제외자
2. 연금수급권자 중 대여를 신청한 교직원
3. 보증보험을 설정하여 대여를 신청한 교직원
4. 대여잔액이 한도액 이상인 교직원(다만, 기간단축에 한하여 허용)
5. 신청일 당일 대여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교직원
6. 행복나눔대여를 신청한 교직원

## 유의사항

1. 대여한도액 초과 보유 교직원의 경우 상환기간 단축만 가능
2. 휴직 교직원의 경우 “대여상환확약 동의서” 제출 후 신청이 가능
3. 매년 생활자금대여 건별 1회에 한하여 조정 가능
4. 신청일 기준 다음 고지월부터 변경된 기간이 적용됨
5. 원리금 상환 중 당월 고지가 된 후에 신청하시는 경우, 당월 고지액 수납 후 잔액을 기준으로 신청됨 (실제 미수납일 경우라도, 수납 후 잔액기준으로 적용)
6. 최소 대여액(100만원) 미만 보유자, 보증보험 설정자, 공단체납자,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교직원 등은 기간조정 신청이 불가능함
7. 당월 고지가 된 후 신청하시는 경우, 접수일부터 해당월 급여일까지 부분 및 일시상환이 불가능함





# 개인회생 공제 대어신청서

※ 약정서 및 유의사항을 읽고 개인회생 공제 대어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는 해당 되는 곳에 √ 표시) (앞쪽)

인적 사항	소속기관	(기관번호 )		기관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직장 전화번호	
신청 내용	신청금액	금	만원		
	공제대상 (해당란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일반대어	<input type="checkbox"/> 행복나눔대어	<input type="checkbox"/> 국고학자금대어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원리금 균분상환 (상환기간 년)		<input type="checkbox"/> 거치 후 균분상환 (거치기간 년, 상환기간 년)	
	입금은행			계좌번호	

### 상환이행 등 약정서

위 본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53조의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관(제27조) 및 대어규정에 의한 대어기준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그 내용 이행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대어금의 상환 종료 시 까지 아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제1조(상환 등)

- 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봉급 중에서 납부하여야 할 월 상환원리금을 학교기관의 장이 공제하고 공단에 납부하는데 동의함. 단, 본인이 휴직 등으로 인하여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월 상환원리금을 매월 봉급일까지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겠음.
- 학교기관의 장은 차용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봉급 중에서 차용인이 귀 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월 상환원리금을 공제(휴직 등으로 봉급이 지급 되지 않는 교직원은 월 상환원리금을 징수)하여 귀 공단이 정하는 납부 기한 내에 틀림없이 납부하겠음.
- 대어에 대한 상환액을 연체 할 경우에는 귀 공단에서 정하는 대출 연체이율로 상환하는데 이의가 없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어를 받은 경우, 귀 공단의 즉시상환 요구에 이의가 없음.
- 대어금 상환 중 기준소득월액 하락 등의 사유로 예상퇴직급여액이 감소하여 대어미상환 잔액이 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한 경우, 상환기간 조정 혹은 한도 초과분에 대한 부분상환 등 공단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겠음.

#### 제2조(퇴직 등의 경우 상환)

- 퇴직 등의 경우, 퇴직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 하여야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연금법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에 의하여 대어 미상환잔액을 퇴직급여(퇴직수당 포함) 또는 유족급여 등에서 감하여 지급받는데 이의 없음.
- 퇴직 등의 경우 원리금 및 연체이자의 정산은 상환 완료일 또는 퇴직급여 청구서 등의 공단 접수일로 함.

#### 제3조(대어이율 등)

- 대어이율 및 월 상환원리금을(대어결정 통지서) 수락하며, 이자율이 변동될 때에는 변동된 달부터 변동된 이율로 상환하겠으며,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 연체이자 납부·기한이익의 상실 등 제반 대어조건을 인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 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어금(원금, 이자, 연체이자)은 면책되지 않으며, 회생기간 동안 상환은 중지되나 이자 및 연체이자는 계속하여 발생하는 채무임을 확인함.

#### 제4조(기타)

- 대어로 인한 소송 발생 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연금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대어조건 등을 변경하거나 대어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대어 지급액이 정부 배정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등).

\* 상환기간 및 구비서류 등 안내는 (뒷면) 확인

년 월 일

대어 신청인

(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대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회생 절차 폐지 또는 면책(변제기간 종료 포함)된 교직원</li> <li>※ 다만 회단 사건인 경우에는 면책 이후에 개인회생 공제대여 가능</li> </ul>			
대여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여 결정 심사일 기준 일시상환액(대여금액은 기재하지 않음)</li> <li>※ 대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여 한도액의 범위 내</li> </ul>			
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가계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연 4회(매 분기별) 변동금리</li> <li>■ 행복나눔대여의 경우 이자율 특례 적용(위에서 정한 이자율 보다 1%p 범위내에서 낮게 적용)</li> <li>■ 연체이자율 : 생활자금대여(행복나눔대여) 이자율 +3%p 적용</li> </ul>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방법 : 등기우편</li> <li>■ 구비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회생 공제대여 신청서</li> <li>2. 신분증 사본</li> <li>3. 제313호 서식 생활자금대여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li> </ol> </li> </ul>			
상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리금균등분할 : 대여총액을 상환기간(횟수)에 따라 매월 균등한 원리금을 상환</li> <li>■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 :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 거치기간 종료 이후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li> </ul>			
	구분	대여금액	상환기간	
			원리금균등 분할	거치 후 원리금균등 분할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재직교직원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7년 이내	2년 거치 5년
	2,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0년 이내	3년 거치 7년	
	5,000만원 이상 - 6,000만원 이하	13년 이내	3년 거치 10년	
<b>유 의 사 항</b>				
<p>[대여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기간 1년 미만자 또는 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자</li> <li>■ 공단에 대한 채무액(국고대여 제외)이 퇴직급여예상액의 1/2을 초과하는 자</li> <li>■ 대여 시 월상환금 합계액(상환중인 국고대여의 월상환금 포함)이 기준소득월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li> <li>■ 법인·개인부담금·대여상환금 등을 체납한 학교기관의 소속 교직원,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교직원</li> <li>■ 급여 사전청구자</li> <li>■ 대여잔액이 한도액 이상인 교직원</li> <li>■ 재직중인 경우 휴직 중인 사람(학교 기관장의 상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능)</li> <li>■ 기타 제한 사정에 따라 대여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